

(붙임2)

## 한국은행 목포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

2024. 3. 28. 전부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기준은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(이하 “세칙”)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(이하 “절차”)에 따라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원대상)** ① 목포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대상은 <별표1>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별표2>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**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** 목포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대출금원장(사본)
2. 사업자등록증(명)(사본)
3. 금리산출표(사본)
4. 주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본)
5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
6. 기타 목포본부장이 요청한 서류

**제4조(평가관리 기준)**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금리 감면폭(30%)
2. 제출자료의 정확성(30%)
3.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
4. 규정 준수 여부(20%)

**제5조(기타 사항)**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」,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」,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 <2016. 6. 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 기준으로 2016년 5월 1일부터, 한국은행 배정 기준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따르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 <2017. 6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에 의한 배정 개시일은 2017년 9월 첫 영업일로 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따른다.

부 칙 <2017. 8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목포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.

부 칙 <2017. 12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8. 5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8. 11. 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9. 5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9. 8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9. 12. 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0. 6. 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0. 12. 14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1. 6. 9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1. 8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1. 12. 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2. 6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 3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 6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 8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5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(2024. 3. 28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**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<sup>1)2)</sup>**

| 지원대상코드 | 지원대상     | 지원부문 | 선정기준  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|--|
| A1     | 창업기업     | 일반   |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 및 「동 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창업 중소기업*으로서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조업(한국표준산업분류표(이하 "KSIC") 10~34) 영위기업   |
| A2     | 벤처기업     | 일반   |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업체   |
| A3     | 혁신기업     | 일반   | 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<br>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 인증서 획득 기업<br>- ISO, JIS, UL, CE*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 인증 기업<br>* ISO(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, JIS(Japanese Industrial Standards), UL(Underwriters Laboratories Inc), CE(Certificate Of Europe)<br>-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 대출(은행자체 TCB 포함, 기술평가등급 T-1~T-4)을 받은 업체<br>-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에서 정한 산·학·연 공동기술 혁신사업 참여기업<br>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갖춘 기업 |
| A4     | 녹색기업     | 일반   | 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녹색기업<br>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동 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(EPD) 인증을 받은 제품 생산업체<br>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의5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 확인(ETV)을 받은 기업<br>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GR(우수재활용제품) 인증을 받은 제품 생산업체<br>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<br>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받은 기업<br>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그린비즈(Green-Biz) 기업<br>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에 의거 녹색인증(녹색기술 인증, 녹색사업 인증, 녹색기술제품 확인, 녹색전문기업 확인)을 받은 기업          |
| A5     | 연구개발우수기업 | 일반   | —  |

| 지원대상코드 | 지원대상               | 지원부문 | 선정기준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A6     | 추천기업 <sup>3)</sup> | 일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라남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, 전남형 강소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</li> <li>- 전라남도가 인증한 일자리 우수기업</li> <li>-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,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,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추천한 업체</li> </ul>  |
| A7     |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       | 일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상운송업(KSIC 501) 영위기업</li> <li>- 농림수산업 지원 산업 영위기업</li> <li>- 식료품 제조업(KSIC 10) 영위기업</li> <li>-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,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(KSIC 20312, 20313) 영위기업</li> <li>- 농수축산용 기기 제작 및 수리업 영위기업</li> <li>- 상시근로자수 500인이하 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중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어업회사법인 (KSIC 46~47)</li> </ul>  |
| A8     |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       | 전략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박 건조·수리업 및 관련 산업(KSIC 3111 등)</li> <li>-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,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이용시설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(단, 관광유희음식점업, 관광극장유희업,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)</li> <li>- 태양광, 풍력, 조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(KSIC 35114, 35119 등)</li> <li>- 세라믹신소재 및 도자기관련 산업(KSIC 23221, 23222, 23229 등)</li> <li>- 천일염 관련 산업(KSIC 07220 등)</li> <li>-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</li> <li>- 해양레저장비 관련 산업(KSIC 3112 등)</li> </ul> |
| A9     | 전입기업               | 일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(제조업(KSIC 10~34) 영위기업에 한함)</li> </ul>  |
| A10    | 수출관련기업             | 일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</li> </ul>   |
| A11    | 소재·부품 생산기업         | 일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,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서, 전문기업확인서,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기업</li> </ul>  |
| A12    | 의료·교육 관련기업         | 일반   | —   |
| A13    |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       | 전략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농림어업(KSIC 01~03)을 영위하는 기업</li> <li>-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 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어업회사법인, 다만, 도매 및 소매업(KSIC 46~47) 영위기업 제외)</li> </ul>   |

| 지원대상코드 |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부문 | 선정기준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A14    | 명절·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<sup>4)</sup> | 일반   | - 한국은행목포본부장이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업체<br>○ 명절 및 연말 등 자금수요기에 운전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<br>○ 수해, 화재 및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<br>○ 연쇄부도 등 특별경제현안 극복을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 |
| A15    | 기타 지원기업 <sup>4)</sup>         | 일반   | - 기타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한 업체  |
| A16    | 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             | 특별   | - 음식·숙박업(KSIC 55~56)<br>- 도소매업(KSIC 45~47)<br>- 여행업(KSIC 752)<br>- 운수업(KSIC 49, 51~52)<br>- 여가업(KSIC 90~91)<br>- 해운업(KSIC 501~502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- 2)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
- 3)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, 각 지역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4) 각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·지원한도·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

<별표2>

**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<sup>1)</sup>**

| 업종명        |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|
| 운송관련 서비스업  | 52915 주차장 운영업   |
| 주점업        | 5621 주점업  |
| 금융 및 보험업   | 64 금융업<br>65 보험 및 연금업<br>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|
| 부동산업       | 68 부동산업   |
| 전문 서비스업    |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<br>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 서비스업    | 855 일반 교습학원   |
| 보건업        | 86 보건업  |
| 오락관련 서비스업  |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<br>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<br>91291 무도장 운영업 |
|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9611 이용 및 미용업<br>96122 마사지업<br>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|

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